

「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01월 13일 심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법 제77조2항에 따라, '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.
- 평창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(안 제3조 ~제4조)
- 나. 지원범위, 방법,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(안 제5조 ~제8조)
- 다.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(안 제9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위임사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

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

○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을

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범위, 방법,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

안 제9조에서는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

각각 규정하였으며

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 참고자료: 관계법령

「지방공무원법」